

## 4. 대학발전기금관리규정

### 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가톨릭꽃동네대학교(이하 "본 대학교"라 한다)의 발전을 위하여 출연되는 대학발전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의 관리와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(2021.6.22.개정)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개인 및 단체(기관)가 본 대학교에 출연하는 모든 기금에 적용된다.

제3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"기금"이라 함은 교육, 연구, 장학 등 학교발전을 위하여 본 대학교에 무상으로 출연된 각종 현금, 부동산, 유가증권 및 연구·업무용 물품 등을 포함한 재산을 말한다.(2021.12.23.자구수정)

제4조(사용원칙) 기금은 출연목적·용도에 따라 출연금액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.

제5조(기금의 종류) 기금은 출연 목적과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
- ① 꽃대사랑기금(일반기부금) : 기부자(단체)가 기금의 출연목적·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출연한 기금
- ② 특정목적기금(지정기부금) : 기부자(단체)가 장학금 등 출연목적·용도를 지정하여 출연한 기금

### 제 2 장 위원회

제6조(설치 및 구성) 발전기금의 효과적인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발전기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. 다만, 발전기금 설치 및 모금, 사용 등 업무 효율성을 고려하여 발전기금관리위원회는 기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.

제7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심의 및 연구한다.

- ① 발전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
- ② 발전기금 모금에 관한 사항
- ③ 발전기금 사용에 관한 사항
- ④ 발전기금 기부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

제8조(구성) 위원회는 기획위원회로 대신한다.

제9조(회의) ① 위원회는 매학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- ②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하며,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요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### 제 3 장 발전기금관리

제10조 (발전기금 관리) 발전기금에 관한 회계처리는 회계연도의 단위로 기장하며, 발전기금 업무는 기획과에서 관장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담당 부서에서 처리 할 수 있다.

- ① 발전기금의 자금운용에 관한 재무업무는 재무과에서 처리한다.
- ② 수증물품은 본교 「물품 규정」에 준하여 총무과에서 처리한다.

③ 부동산을 수증 받은 경우 소유권 이전 등의 권리보전에 관한 조치는 총무과에서 처리하고 이때, 부동산의 자산평가는 「지방세법 시행령」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 또는 전문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평가액에 의한다.

④ 지정기부금 중 수혜자를 지명한 장학금은 기획과로 수입보고 후 학생과에서 처리한다.(2021.12.23.개정)

⑤ 지정기부금 중 수혜자를 지명하지 않은 장학금은 기획과로 수입보고하고 재무과는 지체없이 장학기금 계정에 예입한다.(2021.12.23.항 추가)

⑥ 이미 납부한 발전기금의 반환은 당해연도에 납부된 기금에 한하여 기부자가 요청할 경우 위원회에서 사안에 따라 금액을 결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반환할 수 있다.(2021.12.23.항 번호 변경)

제11조(발전기금 사용) 재무과로 이관된 기금은 다음과 같이 집행한다.

① 꽃대사랑기금과 기금 소속이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목적기금은 기획과에서 본회계에 준하여 예산을 편성·집행한다.

② 지정기부금은 총장의 승인을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.

제12조(발전기금 사용 제한) 위원회가 기부금의 용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기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13조(회계처리) 모든 발전기금은 교비 회계에 포함시켜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한다.

제14조(영수증 발급) 발전기금 주관부서인 기획과는 발전기금 기부자에게 총장 명의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

## 제 4 장 기 타

제15조 (기부자 예우) 총장은 기금 출연자에 대하여 별표1와 같이 예우를 하며 편의를 제공한다.

## 제 5 장 보 칙

제9조 (준용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2021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발전기금 기부자 예우 기준

금액 예우사항	100억 원 이상	10억 원 이상	1억 원 이상	1천만 원 이상	1백만 원 이상
총장 명의 감사장 및 감사패	○	○	○	○	○
명예의 벽 등재	○	○	○	○	○
기념품 증정	○	○	○	○	○
학교소식지 발송	○	○	○	○	○
학교달력 및 연하장 발송	○	○	○	○	
학교 행사 초청	○	○	○		
명절선물	○	○	○		
주요공간 기부자 명명	○				

\* 법정기부금 영수증 발급 (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한 세금 감면)

\* 위 예우혜택은 기부금액 기준이며, 일부 예우내용은 혜택기간이 제한적일 수 있다.(2021.12.23.개정)